

특허의 경제적 가치평가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980년 13,628건, 1990년 48,474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39,173건이 출원되어 그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처리 현황은 1999년 144,700건 2000년 137,117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1999년 95,503건(특허62,635, 실용 32,868)이 등록 되었으며, 2000년 76,701건(특허 34,956, 실용41,745)이 등록되었다.

이렇게 매년 특허청에 등록권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식점에서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출원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1947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7,659건, 1980년 37,261건, 1990년 114,069건, 2000년 326,062건으로서 2000년 대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다출원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1960년 3,457건, 1970년 15,323건, 1980년 35,966건, 1990년 92,966건, 2000년

276,744건이 이루어져 이 중에서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5,301건, 1990년 54,325건, 2000년 126,395건이 등록되어 평균 41%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 ◎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 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의 척도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 벤처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 까지 4,500여개를 기록하였고, 2000년 말 8,798개, 2001년 7월말 현재 10,431개가 창업되어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처기업이 2만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인데 벤처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지적소유권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 ◎ 특허의 가치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그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나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실시료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면 특허기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 ◎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 ◎ 첫번째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

서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년수를 잔존기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하여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로얄티 산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 ◎ 두번째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

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으로는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평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적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 할 점을 살펴보면, ①비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의금액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②경제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 세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난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

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 편의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벤처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기업기술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처창업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2000.06.23공포)으로 이 법에 근거한 기술력평가기관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자체의 어려움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기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당사자간 기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방법

론과 홍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약업계, 신약 공동개발 '봄바람'

전세계 제약기업이 신약 연구개발(R&D)에 바이오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에 관한 특허권의 70% 이상이 오는 2005년 만료돼 신약 개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제약기업은 자체 연구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연구성과물을 사들이거나 공동연구 모델을 구축해 생존을 꾀하고 있다.
- 자본력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기업은 바이오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거나 신약 스크리닝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생명공학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카피 의약품 제조에 급급하던 국내 제약업체들도 의약분업과 해외 업체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면서 바이오벤처의 연구력을 활용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최근 신약 개발과 새로운 의료기기 발굴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영입하고 유망 바이오벤처기업과 협력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신약 스크리닝 전문 바이오벤처 M사와 자사의 중앙연구소를 경쟁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신약 개발을 시작했다.
- 중외제약은 M사 외에도 조합화학 전문바이오벤처 I사 등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성하

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R&D에 바이오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수화학(대표 윤신박)은 해외 유망 바이오 업체와의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덴마크의 젠맵과 인간항체 관련 4개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영국의 스캔셀에 지분을 참여해 난치성 암치료 용 항체인 “항 EGF수용체 항체” 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았다.
- 다국적기업들도 전세계 유망 바이오벤처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는 마찬가지다.
- 미국의 암젠은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선바이오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기술 습득에 나섰다. 암젠은 선바이오가 개발한 단백질 사슬 중 특정부위에 선택적으로 PEG를 붙이는 기술(Pegylation)을 자사의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에 응용시켜보는 시험을 거치고 가장 약리작용이 뛰어난 제형을 선발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암젠은 임상3상을 진행 중인 면역증강제 PEG-G-CSF의 제형에 필수적인 PEG 유도체 기술을 선바이오로부터 얻게 된다.

미 대법원, 저작권 20년 연장 위 헌법소지적

미 연방대법원이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포함한 수백만건의 저작권을 20년간 연장하도록 허용한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디즈니사가 오는 2004년에 미키마우스, 또 그 이후 수년내에 도널드덕, 플루토, 백설공주, 구피, 덤보 등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희귀도서를 온라인출판하는 에릭 엘드레드가 주도하는 한 단체는 저작권시효의 20년 연장을 정한 지난 1998년의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이 위헌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엘드레드 단체는 미 의회가 미국 기업들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지난 40년간 무려 11번이나 당초 14년이었던 저작권 시효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 자유스러운 표현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워싱턴 항소법원은 저작권 연장이 저작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소니 보노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도 소니 보노법이 유럽연합(EU)의 관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지지를 나타냈으며 대법원에 엘드레드 단체의 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현재 법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은 96년간 보호받으며 개인이 신규로 받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존기간에 사망 후 70년을 더 보장받게 돼 있다.

저작권 시효가 말소되면 아무나 로열티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산타클로스나 엉클샘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조지거쉰 등의 음악 작품 등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번복을 결정하면 더이상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이 번복 절차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Lcd특허에서 일본 추격

한국이 세계 박막트랜지스터(TFT) LCD 특허분야에서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다.

홍콩 차이나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등록된 TFT LCD 특허를 보유한 업체 가운데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가 일본 업체에 이어 4위(102건)를, 삼성전자는 82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특히 3위인 도시바(105건)와는 거의 차이가 없어 작년 TFT LCD 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를 석권한 아래 원천기술 면에서도 선진국 업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통적으로 TFT LCD 분야에서는 일본이 기술과 제품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에 밀렸지만 기술력만큼은 일본과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었다.

보통 특허출원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 등록이 인정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98년·99년 출원된 것만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기술개발력과 출원수를 감안하면 앞으로 수년 뒤에는 일본업체들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국 LCD 특허 등록건을 살펴보면, 샤프가 212건으로 1위, 히타치가 158건, 도시바 105건, LG필립스LCD 102건, 세미컨덕터에너지래버리토리가 94건, 캐논이 89건, 삼성전자가 82건, 세이코 앱슨이 74건의 순이었다.

LG필립스LCD는 지난해 미국 락웰 콜린스에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계 노트북용 TFT LCD의 사실상 표준을 주도하는 스텠더드 패널스 워킹 그룹(SPWG)에 채택된 사이

드 마운팅 특허·2포트드라이브 등 TFT-LCD 관련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PDA 특허출원 증가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www.kipo.go.kr)은 지난 2000년 국내

에 공개된 PDA 관련 특허·실용신안은 324건으로 지난 99년 180건보다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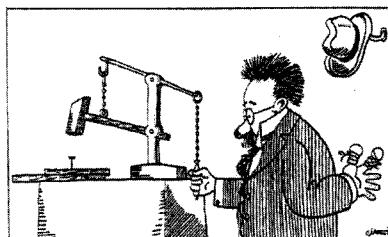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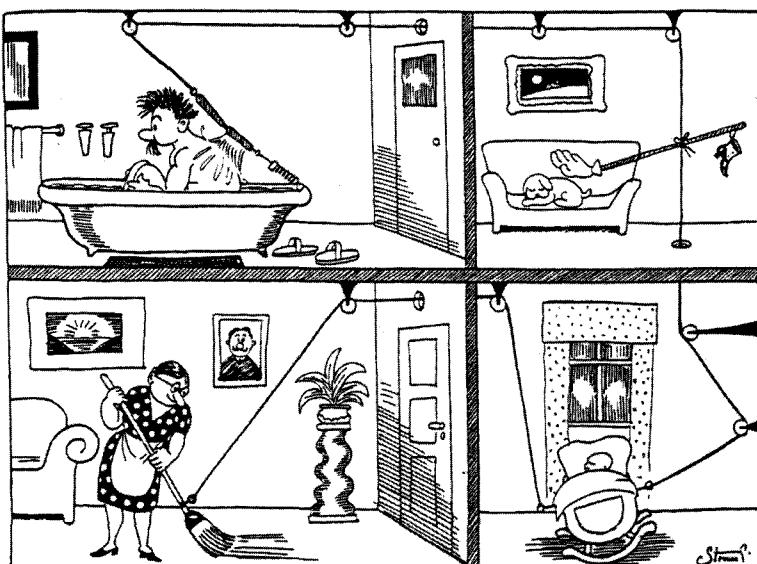
PDA 관련 출원은 지난 97년 71건였던 것이 98년 151건, 99년 18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출원내용도 최근 들어 단순한 기능부가 및 케이스 위주의 출원에서 장치 및 내장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에 관한 것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PDA가 빠르게 보급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발특2002/4



저작권 iFIA